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8
------	------

2024. 06.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5월 27일, 이민석 의원(찬성자 22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05월 3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6.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민석 의원)

1. 제안이유

- 전통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작은 불이라도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뿐 아니라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의 개정(2024.08.21.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원사업에 화재·풍수해¹⁾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전통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3.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장 환경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및 지원내용

- 현재 서울시는 전통시장법과 동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전통시장 이벤트,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말 기준으로 전체 시장수 389개소, 점포수 6만8천여개소, 상인수 10만여명, 상인회 등록수 298개가 있음.

<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

(2024년 1월말 기준)

구 분 ²⁾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수	상인회 등록수(개)
계	389	68,660	107,019	298 (76.6%)
등 록 ³⁾	118	31,127	39,709	60 (50.8%)
인 정 ⁴⁾	121	15,952	30,238	115 (95.0%)
상점가 ⁵⁾	62	11,252	22,977	60 (96.8%)
골목형상점가 ⁶⁾	64	8,182	11,159	62 (96.9%)
무등록 ⁷⁾	24	2,147	2,936	1 (4.2%)

2)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됨.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4)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6) 전통시장법 제2조제2의2에 따라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7) 전통시장으로 등록(인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장

- 또한 서울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278억 5천 8백 만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2024년 서울시 전통시장 등 주요 지원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사업 내용	예 산
합 계		27,858
경영 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02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18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18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3,839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00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등 지원	65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4,822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57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97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814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VIP존)	71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62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2,932

※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480백만원),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이용보조) 397백만원 별도

다. 주요내용 검토

(1) 지원사업(안 제4조제5호 신설)

- 안 제4조제5호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과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이는 지난 2024년 2월 20일에 개정된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과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은 주로 ▶밀집된 점포, ▶좁은 통로, ▶샌드위치 패널과 함석 지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28건 이상의 화재와 3억 5천만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 및 피해액 >

(단위 : 건,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화재 건수	28	20	38	86
재산 피해액	940,996	77,688	299,371	1,048,621

- 이에 지난 2021년 정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⁸⁾」을 제정

하여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⁹⁾를 매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별도의 화재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 내 안전 시설(CCTV 설치, 소방·전기·가스 시설 등) 개선 사업과 함께 노후 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의 화재예방 사업을 시행 중이며, 풍수해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 등의 옥상방수, 아케이드 누수 보수, 누수 물받이 설치 등을 진행 중임.
- 또한 서울시는 전통시장법¹⁰⁾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소상공인시장

8)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9)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용 전기설비(1,000V이하, 75kW만)와 사업용전기설비(발전, 송전, 변전, 배전)이외의 설비를 말함.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진흥공단(이하 “공단”) 화재공제보험 가입자에게 시·구비 매칭으로
납입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되고 있음.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전통시장(인정 및 등록) 상인 중 화재공제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 + 화재배상책임 특약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63,360원 한도(시 40%, 구 40%, 자부담 20%)
 - 주계약(재물손해, 의무가입) : 2천만원 이상의 보장범위 중 택 1
 - 특약 : 화재배상책임만 가입비 지원, 기타 특약은 점포에서 부담

구 분		2백만원 (건물/동산 각 1백만원)	1천만원 (건물/동산 각 5백만원)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5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 5백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재물 손해	A급	12,800	39,200	72,200	138,200	171,200	204,200
	B급	16,300	56,900	107,700	209,200	253,700	310,700
화재배상 책 임 (특 약)		- 화재배상책임 6,200원(A급, B급 동일) (대인) 1인당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사고당 1억원 한도 ※ 기타 특약사항은 점포에서 부담 (임차배상, 음식물배상,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일)					

- 그러나 보험료에 대한 일부 자부담(20%)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호응도가 낮아 서울시 전통시장 전체 영업 점포 38,680개 중 가입률은
23.6%에 불과한 9,140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

(단위 : 개, '24. 5월 기준)

시장 점포 수	가입 현황		
	계	민간보험('24.1기준)	화재공제보험
38,680	19,812(51.2%)	10,672(27.6%)	9,140 (23.6%)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집중호우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2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이민석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서상열,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최민규, 허 훈, 황유정,
황철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전통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작은 불이라도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뿐 아니라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화재·풍수해예방 점검 및</u> <u>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u> <u>지원 사업</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나, 서울시 관련부서(중대재해예방과 등)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참고] 2024년도 전통시장 재해예방, 환경개선, 화재보험 지원 관련분야별 예산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제5호 (화재·풍수해예방 점검, 환경개선 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	68,285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4,743,900
	○ 화재보험 가입지원	480,000

※자료 : 2024 서울시 예산서

※화재보험 가입지원은 공제료 납입금액의 80%까지 지원, 전액지원 시 추가재정 소요(120,000천원)가 발생할 수 있음

- ①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예방점검은 해빙기, 추석, 동절기 등 재난위험시설물 등 각종 점검 기추진
(화재) 市 관련부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중대재해예방과46, '24.1.2.) *전통시장 포함
(풍수해) 태풍, 폭우, 홍수,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점검은

'24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차수안전과2429, '24.2.8),

'23/24년 겨울철 제설대책 현장 점검(도로관리과9022, '23.12.1.)을 통해 사전 예방점검 기추진

※ 서울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예산편성액 : 1,224백만원

※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 사업내용 : 태풍, 폭우, 홍수,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 시설, 재고 자산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
- 가입대상 :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 등
- 지원금액 : 전액(제3자 기부가입) *보험료 중 자부담분을 제3자(기업 등)가 납부하여 가입하는 방식

- 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기추진 [붙임1 참조]

- ③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 기추진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전통시장(인정, 등록) 화재공제보험 공제료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63,360원 지원(공제료 납입금액의 80%)
- 예산액 : 480백만원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1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화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 제출자료 참고)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지원내용 : 시장 내 공동시설(안전 및 편의시설 등) 개선
 - 편의시설 확충 :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등 설치 지원
 - 안전시설 개선 : CCTV 설치, 소방·전기·가스 시설 등 개선
- 분담비율 : 시비 69~81% 이하, 구비 9~21%, 민간 10%
 -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시·구비 차등부담
- '24년 예산 : 14,744백만원(시비)

②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

□ 사업개요

구분	노후전선 정비사업 (중기부 공모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중기부 공모사업)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전통시장 개별점포별 화재신호 자동 통보시설 설치	전통시장(인정, 등록) 화재공제보험 공제료 지원
지원대상	8개구 10개 시장	4개구 4개 시장	25개구 147개 시장
지원금액	개별점포당 최대 250만원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개별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점포당 연 최대 163,360원 지원 (공제료 납입금액의 80%)
'24년 예산	1,814백만원	396백만원	480백만원

['23년 추진실적]

- ▶ 노후전선 정비사업 : 9개구, 12개 시장, 985백만원 지원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8개구, 8개 시장, 445백만원 지원
- ▶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 25개구, 227개 시장, 413백만원 지원